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법(법률 제18607호)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
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“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 여건, 소득·재산”으로 하고, 후단 중 “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은“을 ”세부 선정 기준“으로 하며, 각 호 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
2.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	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<u>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</u> 이 경우 <u>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</u>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① ----- ----- 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 여건, 소득·재산.</u> ----- ----- <u>세부 선정 기준은</u> -----.
	1. <u>수급자 또는 차상위자</u>
	2.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</u>
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<u>수급자 및 차상위자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②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⑨ (생략)	③ ~ ⑨ (현행 제3항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72